

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려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0. 2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



- 1. 건 명: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연번 | 성명  | 생년월일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의 명칭              | 서류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송달 불능 사유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목○자 | 67.02.25. | 충남 아산시 ○방○ 솔○○<br>2○1, 10○동 7○○호 | 실업급여 반환명령<br>결정 통지서 |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에 따라<br>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<br>○ 반환명령액: 1,348,030원 | 연락 두절 및 폐문부재 |

4. 공고기간: 2026. 10. 2. ~ 2026. 10. 17.(15일간)

※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5. 불복사항의 고지방법: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유소연 수사관(Tel. 041-620-74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